



제433회국회(임시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사업비 우선사용〉
■ 성일중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3123호)

2026. 3.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신항진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1. 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사업비 우선사용	3
※ 참고자료	9
1. 석유 수입·판매 부과금 개요	9
2. 석유화학산업단지 현황	10

I. 제안경위

2024년 8월 23일 성일종위원이 대표발의한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25년 10월 2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에너지의 공급 및 가격 안정과 에너지 및 자원 관련 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투자계정과 용자계정으로 나누어 운영하고 있음.

그런데 특별회계 투자계정의 세입원 중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8조에 따른 부과금과 가산금은 석유 관련 사업자들로부터 징수한 것인 만큼 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처럼 석유제품의 생산·제조 과정에서 피해를 입고 있는 지역의 주민을 위해서 일정액을 우선적으로 사용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투자계정의 세출 중 에너지 및 자원 관련 사업에 필요한 사업비와 관련하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8조제10항에 따른 금액은 「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행되는 지원사업에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 및 제5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성일중의원이 대표발의한 「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3120호) 및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12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Ⅲ. 검토의견

1. 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사업비 우선사용

개정안은 에너지 및 자원 관련 사업에 「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원사업을 추가하고, 투자계정의 세출 중 에너지 및 자원 관련 사업에 필요한 사업비와 관련하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8조제10항¹⁾에 따른 금액은 「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²⁾에 따라 시행되는 지원사업에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 및 제5조).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에너지 및 자원 관련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 5. (생략) <u><신설></u>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과 관련된 연구개발 및 부대사업	제2조(정의) ----- ----- -----. 1. ~ 5. (현행과 같음) 6. 「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원사업 7. -----제6호까지의----- -----
제5조(투자계정의 세입·세출) ① (생략)	제5조(투자계정의 세입·세출) ① (현행과 같음)

1)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03122호, 성일종의원 대표발의)에 따라 신설되는 조항으로, 내용은 다음과 같음.

“⑩ 제1항의 부과금 및 그 가산금으로 조성된 재원 중 100분의 3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은 「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2) 「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2203120호, 성일종의원 대표발의)에 따라 제정되는 법률로, 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음.

현행	개정안
② 투자계정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에너지 및 자원 관련 사업에 필요한 사업비(제1항제6호에 따른 광해방지사업금 및 가산금은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행되는 광해방지사업에 우선적으로 사용함³⁾을 원칙으로 한다) 2. ~ 6. (생략) ③ (생략)	② ----- -----. 1. ----- -----제1항제2호4)에 따른 부과금과 가산금 중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8조제10항에 따른 금액은 「석유화학단지 주변 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행되는 지원사업에 사용하고, 제1항제6호에----- ----- ----- ----- 2. ~ 6.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현행법에서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8조⁵⁾에 따라 부

- 3) 산업통상부에서는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광해방지사업(5440-302)’을 통해 해당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2026년 880억원을 출연하였음.
- 4)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제5조(투자계정의 세입·세출) ① 투자계정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8조 및 제37조에 따른 부과금과 가산금
- 5)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8조(석유의 수입·판매 부과금)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석유 수급과 석유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로부터 부과금을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제17조에 따른 석유비축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석유를 수입하는 등 부과금을 징수하지 아니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과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석유를 수입하거나 석유제품을 판매하는 석유정제업자·석유수출입업자 또는 석유판매업자
2. 국제 석유가격의 현저한 등락으로 인하여 지나치게 많은 이윤을 얻게 되는 석유정제업자 또는 석유수출입업자
- ② ~ ③ (생략)
-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부과금 징수대상자가 납부기한까지 부과금을 내지 아니하면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한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 ⑤ ~ ⑧ (생략)

과·징수된 ‘석유 수입·판매 부과금 및 가산금’을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이하 “에특회계”) 세입으로 하도록 규정하면서, 이러한 세입 재원을 바탕으로 에너지 및 자원 관련 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석유 수입·판매 부과금 및 가산금’은 석유를 수입하거나 석유제품을 판매하는 사업자들로부터 징수하는 것인데, 동 재원을 석유제품을 생산·제조하는 과정에서 피해를 입고 있는 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의 주민을 위해서도 사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석유 수입·판매 부과금 및 가산금’ 중 일부를 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사용하도록 하려는 목적으로 개정안 및 「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2203120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03122호)이 발의되었음(이상 3건 성일중의원 대표발의).

「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2203120호)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 지원사업⁶⁾을 시행하고, 그 지원사업에 드는 비용을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이하 “에특회계”)에서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이고,

⑨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징수한 부과금 및 가산금은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에 귀속된다.
6) 「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제5조(지원사업의 종류 등) ① 지원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본지원사업: 주변지역의 개발과 주민의 복리를 증진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지원사업
2. 특별지원사업: 주변지역이 속한 시·군 및 자치구(이하 “지방자치단체”라 한다) 지역에 대하여 시행하는 지원사업
3. 그 밖에 주변지역의 발전과 환경 및 안전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조사·연구 활동을 포함한다)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03122호)은 ‘석유의 수입·판매 부과금 및 가산금’의 3%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⁷⁾을 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사용하도록 ‘석유의 수입·판매 부과금 및 가산금’의 용도를 지정하는 내용이며,

개정안은 예특회계 투자계정 세출에서 ‘석유의 수입·판매 부과금 및 가산금’으로 조성된 재원 중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서 지정하는 금액(3%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은 「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행되는 지원사업에 사용하도록 하는 것임.

7) 2024년 석유수입·판매부과금 실적은 1조 2,588억원으로 3%에 해당하는 금액은 약 378억원임.

[성일중의원이 대표발의한 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 지원 관련 법률안]

법률안	주요내용	조문
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제2203120호)	○ 지방자치단체장은 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 지원사업을 시행함. ○ 지원사업에 드는 비용은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에서 부담하도록 함.	안 제1조 ~제19조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203122호)	○ 석유 수입·판매 부과금의 부과목적에 석유사업의 원활한 운영과 발전을 추가 ○ 석유 수입·판매 부과금 및 가산금으로 조성된 재원 중 100분의 3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의 금액은 「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원사업에 사용하도록 함.	안 제18조제1항 및 제10항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203123호)	○ 에너지 및 자원 관련 사업에 「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원사업을 추가 ○ 에특회계 투자계정 세출에서 석유의 수입·판매 부과금 및 가산금으로 조성된 재원 중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서 지정하는 금액은 「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행되는 지원사업에 사용하도록 함.	안 제2조제6호, 제5조제2항 제1호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의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개정안은 「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2203120호) 및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0312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해당 법률안의 심사결과를 반영하여 개정안을 심사할 필요가 있음.

참고로,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 지원사업’이 에특회계 지출대상인 ‘에너지 및 자원 관련 사업’과는 성격이 상이하

에특회계 설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⁸⁾이 있으며, 석유 수입·판매 부과금의 대부분(2025년 기준 76.8%)을 피해 원인제공과 무관한 정유사가 납부하고 있어 원인자 부담원칙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의견임.

또한 산업통상부는 개정안이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는 「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에 대하여 다른 산업과의 형평성, 다른 입법례 등을 고려할 때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 지원사업·에너지 및 자원 관련 사업]

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제5조(지원사업의 종류 등) ① 지원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본지원사업: 주변지역의 개발과 주민의 복리를 증진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지원사업 2. 특별지원사업: 주변지역이 속한 시·군 및 자치구(이하 “지방자치단체”라 한다) 지역에 대하여 시행하는 지원사업 3. 그 밖에 주변지역의 발전과 환경 및 안전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조사·연구 활동을 포함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에너지 및 자원 관련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에너지 및 지하자원(해양광물자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개발·생산·수송·비축·공급·품질관리 사업 2. 에너지 및 지하자원 관련 산업의 구조조정 사업 3. 에너지 절약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사업 4. 가스의 안전관리와 유통구조의 개선 사업 5. 에너지복지 사업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과 관련된 연구개발 및 부대사업

8) 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 지원사업이 해당 지역주민에 대한 지원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인 반면, 「에너지법」은 에너지의 공급 및 가격 안정과 에너지 및 자원 관련 사업의 추진을 목표로 하고 있어 그 성격이 상이한 측면이 있음.

문 의 처
02)6788-5536

참고 1

석유 수입 · 판매 부과금 개요

- 근거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8조·제37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 목적 : 석유의 수급 및 가격안정
- 징수대상자
 - 석유(LNG 포함)를 수입하거나 석유제품을 판매하는 석유정제업자 · 석유수출입업자 또는 석유판매업자, 석유대체연료를 수입하거나 판매하는 석유대체연료 제조 · 수출입업자

○ 부과기준

구분	부과요건	납부의무자	부과기준
수입 부과금	원유·석유 제품 및 천연가스 수입 시	석유정제업자, 석유수출입업 자	• 원유 및 석유제품 : 16원/리터('06.2.7부터) • 석유대체연료 : 16원/리터. 단, 유화연료유는 11원/ℓ('06.2.7부터) • 천연가스(LNG) : 24,242원/톤('07.1.1~'19.3.31) 발전용 3,800원/톤, 발전용외 24,242원/톤('19.4.1부터)
판매 부과금	고급휘발 유와 부탄 판매 시	석유정제업자, 석유수출입업자, 석유제품 생산판매업자	• 고급휘발유 : 36원/ℓ('00.7.29부터) • 부탄 : 62,283원/톤('05.7.8부터)

- 용도 :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의 세입으로 전입

○ 징수실적

(단위 : 백만원)

구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수입 부과금	계	1,640,742	1,571,772	1,596,292	1,794,918	1,408,599	1,115,179	1,298,172	1,509,245	918,366	1,072,658
	석유	848,448	797,348	714,659	756,001	744,526	569,774	709,264	954,801	390,831	568,255
	LNG	792,294	774,424	881,633	1,038,917	664,073	545,405	588,908	554,444	527,535	504,403
판매부과금		240,454	222,128	217,863	216,317	195,469	192,224	186,740	151,394	168,975	186,131
합계		1,881,196	1,793,900	1,814,155	2,011,235	1,604,068	1,307,403	1,484,912	1,660,639	1,087,341	1,258,789

* 총징수 금액에서 환급액을 제외한 순징수 금액임

참고 2

석유화학산업단지 현황(2024. 6.)

(단위: 개, %)

산업단지	시도	시군	단지명	입주업체(A)	석유화학(B)	B/A
국가 (5개)	충북	보은군	보은	1	1	100.0%
	충북	청주시	오송생명과학	73	45	61.6%
	충남	서산시	대죽자원비축	1	1	100.0%
	전남	여수시	삼일자원비축	2	2	100.0%
	경남	거제시	지세포자원비축	1	1	100.0%
일반 (41개)	부산	기장군	기룡2	2	1	50.0%
	대구	달성군	대성하이스코	2	1	50.0%
	세종	세종	전의2	32	20	62.5%
	세종	세종	부강	11	6	54.5%
	경기	김포시	통진(팬택)	4	3	75.0%
	경기	안성시	덕산	10	7	70.0%
	경기	안성시	방초	9	6	66.7%
	경기	안성시	안성제3	50	28	56.0%
	경기	안성시	원곡	6	3	50.0%
	경기	화성시	장안첨단(2)(외국인)	8	4	50.0%
	경기	화성시	팔탄(한미약품)	1	1	100.0%
	경기	화성시	향남제약	52	45	86.5%
	경기	안성시	지문	1	1	100.0%
	경기	안성시	개정지방	12	6	50.0%
	경기	용인시	농서	1	1	100.0%
	경기	화성시	영진바이오	1	1	100.0%
	경기	화성시	동진	1	1	100.0%
	강원	춘천시	남면	1	1	100.0%
	강원	홍천군	홍천북방	2	1	50.0%
	충북	충주시	중원	24	14	58.3%
	충북	음성군	대풍	11	7	63.6%
	충북	진천군	이월	6	6	100.0%
	충북	음성군	생극	41	21	51.2%
	충북	진천군	죽현	2	1	50.0%
	충북	음성군	오선	20	12	60.0%
	충북	진천군	신척	99	54	54.5%
	충남	공주시	탄천	34	25	73.5%
	충남	서산시	대산	4	4	100.0%
	충남	서산시	대죽	12	8	66.7%
	충남	서산시	대산컴플렉스	3	3	100.0%
	충남	서산시	현대대죽	3	2	66.7%
	충남	예산군	예당	41	22	53.7%
	충남	아산시	아산디스플레이시티1	6	3	50.0%
	충남	공주시	남공주	22	14	63.6%
	충남	금산군	금산	1	1	100.0%
	경북	영주시	SK스페셜티일반산업단지	3	3	100.0%
	경남	창녕군	넥센	1	1	100.0%
	경남	진주시	지수	2	2	100.0%
계				619	390	63.0%

주: 1. 석유화학업종(B)은 한국표준산업분류 중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19),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외)(20), 의약품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21),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22)에 해당하는 업종을 의미함(괄호 안의 숫자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중분류 코드번호임)

2. 제정안에 따른 석유화학단지의 요건 중 “단지 내 석유화학입주업체 비율이 50% 이상인 산업단지” 기준임(입주율과 가동률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석유화학입주업체의 연간 생산액 기준자료는 확인 곤란)

자료: 한국산업단지공단 제출자료